

『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4월 29일

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

나. 제안이유

- 교육관 명칭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
내실있는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 위탁
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(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
→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)
- 교육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2조)
- 교육관 사무 위탁단체의 범위 확대(안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
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- 본 「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은
 - 당초 교육관의 명칭 공모 결과 선정된 “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”으로 제명 및 교육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반영하고
 -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도 교육관을 관리·운영 할 수 있도록 교육관의 사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